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758 발의연월일: 2022. 2. 11.

발 의 자:김도읍·김태흠·권명호

조명희・金炳旭・추경호

구자근 • 이헌승 • 전봉민

정운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·소멸, 보험료 납부·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, 그 일환으로 보험료의 신고등 사업주가 해야 할 보험사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별도의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인가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, 인가취소가 침익적 행정행위임을 고려할 때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3조).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5항 중 "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인가"를 "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가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
- 3.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
- 4.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
- ⑥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및 인가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보험사무대행기관) ① ~	제33조(보험사무대행기관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	5
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	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</u>
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	<u>당하면 그 인가</u>
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제2항	<u>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</u>
<u>에 따른 인가</u> 를 취소할 수 있	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
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	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
<u><신 설></u>	2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
	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
	<u>한 경우</u>
<u><신 설></u>	3.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
	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
	<u>경우</u>
<u><신 설></u>	4.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
	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
	<u>경우</u>
<u><신 설></u>	⑥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
	의 인가 및 인가취소 등에 필
	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	<u>한다.</u>